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회운영위원회
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국회사무처의 사무에 경호 명시〉

■ 김병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415호)

2025. 7.

국 회 운 영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병주 · 조계원 · 윤후덕 · 부승찬 · 박지원 · 강준현
안규백 · 이병진 · 민홍철 · 허 영 · 박선원 · 추미애
의원(12인)

2. 제 안 일 : 2025. 3. 27.

3. 회 부 일 : 2025. 3. 28.

※ 의안번호 : 9415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,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 · 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 · 출입을 통제하고,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.

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 ·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는데,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, 국회 직원의 진 · 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 · 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.

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

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

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(안 제2조제8호 개정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‘경호’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 8호).

[표-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직무) 국회사무처(이하 “사무처”라 한다)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	제2조(직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국회의 청사관리·경비 및 후생	8. 국회의 청사관리· 경호 ·경비 및 후생
9. ~ 11. (생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
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한 반면, 계엄군의 출입은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, 그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.¹⁾

1)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,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-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,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.

참고로, 현재 국회 경호체계는 3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,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,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,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, 청사출입 안내,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,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, 출입문 경비,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,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(서울특별시경찰청)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.

개정안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경호 기능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행법에 국회사무처 직무의 하나로 “경호”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.

다만,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국회 경호·경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회차원의 독자적인 경호·경비체계 마련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」 등 관련 법률안²⁾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 이들 법안 중 일부는 국회 경호·경비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회소속기관(국회경호처 등)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동 개정안은 국회 경호·경비체계의 개편 방향과 연동하여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2) 2025년 7월 4일 기준, 국회 경호·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개정을 포함한 31건의 개정안(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)과 5건의 제정안(「국회 경호 등에 관한 법률안」, 「국회경위처법안」, 「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」 등) 등 총 36건의 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으로, 이들 제·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, ② 국회경비대,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,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.

[참고] 현행법상 국회사무처의 직무 규정 현황

1. 법률안, 청원 등의 접수·처리
2. 국회의 법안심사, 예산결산심사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,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
3.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
4.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
5.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
6.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
7.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
- 8. 국회의 청사 관리·경비 및 후생**
9.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·운영과 비상대비업무
10.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유재산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

문 의 처

02)6788-5014